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건 2022고단1484 사기, 업무상횡령

피고인 B (<주민등록번호>), 의사

주거 <주소>

등록기준지 <주소>

검사 정기훈(기소), 신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E

판결선고 2023.8.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5.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A병원, A요양원, C병원이 포함된 의료법인 D의료재단의 대표이자 A병원의 병원장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년 8월 초경 경남 하동군 <주소>에 있는 <점포명>에서 피해자 F(남, 63세)에게 'A 병원 개원을 해야 하는데 개원하기 전에 정리하지 못한 공사대금, 인건비 등을 지불해야 한다. 3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일에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금은 2021. 8. 30.까지 변제하며, 만약 차용금을 갚지 못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하여 질권설정등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채권 양도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D의료재단은 당기 손실액이 11억 원에 달하였고, D의료재단의 거래상대방들에 대한 채무 합계 120억 원 가량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도 경남은행으로부터 합계 3억 2천만 원,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 원등 합계 4억 2천만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0. 14:42경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로 송금 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의료법인 D의료재단의 대표이고, A병원의 병원장이므로, 위 의료법인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원천징수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각 직원들의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주소>에 있는 A병원 사무실에서, 위 의료법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 외 48명으로부터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합계 14,395,280원, 고용보험료 3,008,160원 등 보험료 합계 17,403,440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다른 직원들의 미지급급여, 의료법인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43,725,555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1. 증인 피해자 F의 법정진술
- 1. F 작성의 고소장(첨부된 공정증서 정본, 각 거래내역서 등 포함)
- 1. G 작성의 고소장
- 1. 4대보험 납부 및 체납내역

- 1. 각 수사보고(2018년 재무제표 등, 피의자 횡령금액 특정)
- 1. 피의자 개인신용정보
-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범 전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경우 편취범의가 없고,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자력, D의료법인의 재정상태, 편취 금원 및 횡령액의 사용처,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죄에 있어서 적어도 미필적인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 횡령액수가 적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정이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을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사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사이에 기지급된 약 2,3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매월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횡령액 가운데 상당액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병국

별 지

- 범죄일람표 -

(단위 : 원)

연번	일자	4대 보험	급액
1	2018. 10.	건강보험	7,197,640
		고용보험	1,504,080
2	2018. 11.	건강보험	6,698,690
		고용보험	1,419,605
3	2018. 12.	건강보험	6,032,340
		고용보험	1,207,525
4	2019. 1.	건강보험	6,351,550
5	2019. 10.	건강보험	5,281,150
		고용보험	1,360,845
6	2019. 11.	건강보험	5,317,390
		고용보험	1,354,740
합계			43,725,555